#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06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 임이자·김위상·박성훈

조승환 • 조지연 • 김용태

유용원 • 고동진 • 최은석

정동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소 종류에 구분 없이 활용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으로 여전히 탄소배출이 높은 부생・추출수소가 국내 유통 수소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소분야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의 생산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미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에서

의 수소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 수소산업의 자생력 있는 시장체계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생산·활용 전 과정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	③		
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			
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			
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		
	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		
	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19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